

반부패 및 뇌물정책

| | |
|---------|------------|
| 최종 수정일 | 2023.12.28 |
| 문서 관리부서 | 경영기획팀 |

목차

- 서문
- 반부패 및 뇌물정책
- 부록

서문

총칙

동원금속(주) 및 관계사의 임직원은 인화단결, 기술혁신, 책임완수를 근간으로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이행하는 모든 사업활동을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 안에서 성실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어간다. 특히 기업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 적용 가능한 모든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영구히 존속·발전하는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목적

본 정책은 동원금속(주)(이하 '회사') 임직원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도덕적 실천기준을 세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협력사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2차 회사도 포함된다).

정책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반부패 및 뇌물정책

1. 직무수행 자세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소속회사의 명예에 부합됨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① 제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③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④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위반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회사는 제반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여 솔선수범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① 뇌물금지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은 어떤 식의 부당한 금전적 이익이나 기타 이득을 약속하거나 제공, 승인 권유 또는 수락하지 않는다.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약속 하지 않는다. 뇌물은 사업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부당한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 약속, 인가 또는 수용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② 부정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 기관과의 부정한 청탁 행위를 금지한다. 회사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요구를 하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때 부정한 청탁은 금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③ 정부에 대한 편의 제공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에게 선물, 식사, 여행, 경조금, 강의로 지급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편의 제공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반부패 관련 법령과 현지에서 적법하게 허용하는 관습의 범위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④ 급행료

회사 및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내외 공무원 등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급행료는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진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기부 및 후원

국내외 공무원 등에게 기부 후원 증여 등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일체 금지한다.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회사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한다.

⑥ 회계기록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회사에서 진행된 회계와 관련한 기록을 명확히 기재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 지출 및 비용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만약 비용 사용 등 거래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거나 그 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반부패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3. 정책위반에 대한 처리

- (1) 반부패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의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 (2)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반부패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즉시 협력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3) 반부패 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사 또는 협력사의 임직원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 민사 및 관련 법령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록

문의처

관련부서: 경영기획팀

제정일자: 2023.12.01

개정일자: -

본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wmic@dwmic.com